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문성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40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2월 03일

발 의 자: 문성호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규남,
김영철, 김원태, 김재진,
김태수, 김혜영, 남궁역,
남창진, 민병주, 박영한,
옥재은, 유정희, 이봉준,
이상욱, 이원형, 이종태,
이종환, 최민규, 홍국표
의원(21명)

1. 제안이유

- 도시에 사는 청소년들이 자연 생태계에 대한 체험을 하고 환경보호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며, 직접 여러 가지 국내 식물들을 보고 알아가며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알도록 유도하기 위함
- 특히 일반적인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이를 방문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한 접근 가능성 향상을 명시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제8조(시민 여가 · 문화활동 활성화)를 여가 · 문화활동 및 환경생태계 교육 활성화로 개정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며 홍보방안에 대해서도 근거함으로 개정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등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 ·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 제목“(시민 여가·문화활동 활성화)”를“(시민 여가·문화활동 및 환경생태계 교육 활성화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여가·문화활동”을 “여가·문화활동 및 환경생태계 교육”으로, “공원이용”을 “공원이용 프로그램과 환경생태계에 관한 교육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공원이용 프로그램”을 “프로그램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공원이용프로그램”을 “프로그램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공원이용 프로그램”을 “프로그램”으로, “조치”를 “조치와 이에 대한 홍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시민 여가·문화활동 활성화) ① 공원관리청은 시민 여가·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계절별 공원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<u>공원이용 프로그램</u>을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<u>공원이용 프로그램</u> 운영 시 참가비는 별표 2의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.</p> <p>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<u>공원이용프로그램</u> 운영의 경우 그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, 위탁 운영할 경우 프로그램운영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④ 공원관리청은 공원이용 활성화와 공정한 이용기회 보장을 위하여 제1항의 <u>공원이용 프로그램</u> 운영 및 공원 시설의 이용 방법을 정함에</p>	<p>제8조(시민 여가·문화활동 및 환경생태계 교육 활성화) ①</p> <p>-----</p> <p>-- <u>여가·문화활동 및 환경생태계 교육</u>--- <u>공원이용 프로그램과 환경생태계에 관한 교육</u> -----.</p> <p>② ----- <u>프로그램</u> -----</p> <p>-----.</p> <p>③ ----- <u>프로그램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④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프로그램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있어서 「서울특별시 약자동
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
위한 조례」 제2조제1호에서
정한 약자의 이용 접근성을
높이기 위해 인터넷·전화·
현장 예약방식 등 이용방법
의 다양화 등 필요한 조치를
할 수 있다.

----- 조치와 이에
대한 홍보-----
-----.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조(시민 여가·문화활동 활성화)를 여가·문화활동 및 환경생태계 교육 활성화로 개정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며 홍보방안에 대해서도 근거함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주병준
추계세제팀장	김중헌
추 계 분 석 관	김지혜

☎ 02-2180-7952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